

제1회 원규심의위원회

2016. 1. 7.(목)

심 의 안 건

서울연구원

The Seoul Institute



순서

1. 임시조직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	1
2.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(안)	3

임시조직운영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임시조직운영규칙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- 연구원 임시조직 책임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서울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직제규정 개정과 연계하여 관련 조항 개정
- 임시조직 책임자 운영범위 확대

현 행	개 정 안
연구위원 이상	직급에 관계없이 원장 임명

4. 시 행 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직제규정 <u>제7조</u>에 의거한 한시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책임자) 임시조직의 책임자는 <u>조직의 규모, 내용에 따라 연구위원</u> <u>급 이상으로 보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직제규정 <u>제11조</u>에 의거한 한시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책임자) 임시조직의 책임자는 <u>원장이 임명한다.</u></p>

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교육훈련규칙 개정[안]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- 연구연수 기간 중 대외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

3. 주요내용

- 직원대외활동규칙 제4조(허가) 및 제4조의2(대외활동 횟수)에 대한 준수내용을 교육훈련규칙 <별표3>의 서약서에 명기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<별표3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서 약 서</p> <p>상기 본인은 이번 연수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</p> <p>1~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< 신 설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서약자 : (인)</p> <p>서울연구원장 귀하</p>	<p><별표3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서 약 서</p> <p>상기 본인은 이번 연수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</p> <p>1~3. (현행과 동일)</p> <p>4. 연수기간은 연수 본래의 목적 달성에 충실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대외활동이 필요한 경우 직원대외활동규칙에 따른 사전 허가 및 대외활동 횟수 등을 준수하겠으며, 이를 어겼을 경우 원내 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서약자 : (인)</p> <p>서울연구원장 귀하</p>